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88
----------	-------

제출년월일 : 2023. 5. .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 전자이미지공인대장과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상위법령 명칭 수정(안 제1조)

나. 전자이미지공인대장과 전자이미지공인 관리주체를 구분(안 제10조)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2023. 4. 13. ~ 5. 3. (제출된 의견 없음)
-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원안 동의
- 4)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 5) 제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의결(2023. 5.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전산정보과장”을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제공”을 “관리”로 하며, “한다.”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공인등록 주관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전산정보과장”을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u>」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u>」 제40조----- ----- ----- ----- -----.</p>
<p>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u>전산정보과장</u>은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u>제공하고</u>,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u>한다</u>.</p>	<p>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u>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u>----- ----- <u>관리하고</u>----- ----- <u>하며</u>, <u>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공인등록 주관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u>.</p>
<p>② 제8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신청하는 기관의 장은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u>전산정보과장</u>에게 송부하여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p>	<p>② ----- ----- ----- ----- ----- <u>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u>----- ----- ----- -----.</p>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음

3. 미첨부 사유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 김보민(02-3153-9918)